

2020년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3. 30.(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37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2건(안건번호 제2020-7322호~737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7322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민원인이 그린 만화를 무단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對審制)가 아닌 관계로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7323호~7325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7326호~7331호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정 블로거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8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65건(안건번호 제2020-795호~859호)

 - 회의결과: 65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5개 안건) 모두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안내 사항 내용, 게시판 내용, 저작물명, 7쪽의 댓글 내용,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8쪽의 저작물명, 사이트명, 댓글 내용, 9쪽~10쪽의 저작물명, 12쪽~13쪽의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쪽~25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제1호 안건 회의록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내용과 관련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제2호 안건 회의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것임.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다만, 시정권고 회의록 10쪽의 C

위원님 의견에 포함된 저작물명 또한 비식별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동의함.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안내사항 내용, 게시판 내용, 저작물명, 댓글 내용, 사이트명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 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쪽~25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 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7322호~7373호

한편, 해당 OSP 사이트는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수 없고 게시글 작성 권한도 없는 것으로 보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큼. 우리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심의·의결하고 있음.

- B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은 1기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임. 지난 1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부결한 바 있음. 이번 2기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2기 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가 없음.
- A 위원 : 해당 사이트에는 주로 어떤 것이 게시되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 게시물들을 제시하면서)해당 사이트를 살펴보겠음.
- B 위원 : (해당 사이트 게시물들을 보면서)신변잡기적인 내용을 업로드하는 사이트로 보임.
- C 위원 : 구글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만들었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는 2020. 3. 29.에 여러 게시물을 업로

드하였음.

- B 위원 :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된 사진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것이 많아 보임.
- A 위원 : 해당 사이트는 블로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보임.
- B 위원 : 다만 블로그와 다르게 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임.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대상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하는 경우도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D 위원 : 해당 사이트는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서버 호스팅하는 것인지 웹 호스팅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서버 호스팅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관리자라는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확인해보았더니 다른 업체 이름이 나왔음.
- D 위원 : '워드프레스 닷컴'과 같은 곳에서 분양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도메인을 별도로 붙일 수 있음.
IP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IP주소 검색 화면을 제시하면서)등록된 자만 나오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DNS인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안은 상업적 저작물인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는데, 저작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경우임. 종전의 시정권고 이력을 보면 사안별로 가부가 나뉘었음.
- C 위원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자가 올린 만화에 저작권 표기가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해당 만화에 저작자의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표기되어 있음. 민원인이 보호원에 원본을 제출하였음.
- C 위원 :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물을 보면서)해당 만화에 저작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사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 게시 뿐만 아니라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임. 해당 콘텐츠의 잠재적 시장 인정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732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본 건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해당 사안은 저작물 자체의 합법 시장 형성 가능성을 판단

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7326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TV만화를 제공하고 있음.

(전체 카테고리 목록을 보여주면서)심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해당 블로그 내 불법복제물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게시물의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최근 게시물에서 ‘♥♥♥♥♥♥♥♥♥♥♥♥♥♥’를 제공하고 있음. 하단에는 광고가 달려 있음.

- B 위원 : 해당 최근 게시물은 2020. 3. 29.에 업로드된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 A 위원 : 해당 블로그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정정지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보호원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에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보호원이 웹하드가 아닌 일반 포털 사이트의 계정을 정지한 이력이 없음. 혹시라도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접속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7326호~733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D 위원 : 해당 사안은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B 위원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의견임. 다만 거듭된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자에 대해서는 계정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326호~73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332호~7373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음악 'ON (가수: 방탄소년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332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MAP OF THE SOUL : 7'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RM, 슈가, 제이홉'과 그 외 7인이 작사, 작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Billboard Hot 100 2020-03-07 (320k)'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100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8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쿨의 황홀한 해방)'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45호는 2020. 2. 5.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6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26.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영화는 할리 쿨이 연인이었던 조커와 헤어진 후 일어나는 위협에 관한 내용임.

(영화 '작은 아씨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61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26.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11.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방송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69호는 웹하드에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시즌 1' 전체를 1,0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넷플릭스에서 2013. 7. 11.에 방영한 총 13부작 미국 드라마 시리즈임. 해당 드라마는 19세 이상 관람가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7332호~737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한 사안임.
- B 위원 :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D 위원 : 같은 의견임.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
의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해야 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332호~7373호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322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7323
호~737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
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
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면부터 21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759호~859호 65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부가 불명확한 65개 안전)은 모두 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6.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